

# 2024학년도 2학기 선한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학생
- 선발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또는 자립준비청년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 1차, 2차 신청자의 학자금지원구간을 확인하여 매달 지급 전 추가 선발 예정
  - 자립준비청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자립준비청년 또는 증빙서류 제출자

구분	증빙서류	서류 발급처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시설	- 입소사실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 선정제외 대상: 수업연한초과자, 휴학자, 직전학기 학사경고·유급·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지원금액: 2구간 이하 월 40만원, 3구간 월 20만원, 자립준비청년 월 100만원
  - 기간: 2024학년도 2학기(2024년 9월~2025년 2월)
  - 지급일: 매월 15일경 지급
  - 지급 중단: 중도 휴학·제적 등 학적 변동 시
- 신청기간: [1차] 2024. 8. 19.(월) ~ 8. 26.(월) 18:00  
[2차] 2024. 9. 6.(금) ~ 9. 13.(금) 18:00  
※ 1차와 2차 두 차수 중 한 번만 신청
- 신청방법: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성적기준 미달 시 장학생 추천서를 대학·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선한인재 장학금)

## 6. 참고사항:

-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출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차후 선발 가능
- 학자금지원구간이 늦게 산출되는 경우라도 지급총액은 동일
  - 학자금 지원구간 산출 이후 최초 지급 시 기존 미지급액을 한 번에 지급
- 선발된 장학생 대상으로 발전기금 기부자에게 감사편지 작성 의무 등이 생길 수 있음
-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 anjd1fo94@snu.ac.kr)

# 선한인재장학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장학금 신청 관련

Q1.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선한인재장학금도 신청할 수 없나요?

A1. 국가장학금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3구간 이하로 산정되거나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선한인재장학금 수혜 대상자입니다. (2024. 2학기 신규 변경)

Q2. 복귀생은 선한인재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복귀하는 학기에 국가장학금 등을 신청하여 2024-2학기 학자금지원 구간이 산출되어야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Q3. 1차 신청했는데 학자금지원구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두 차수 중에 한 번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차, 2차 신청자 전체 대상으로 매달 학자금지원구간 산출내역 확인 후 추가 선발합니다.

Q4. 사정이 있어서 선한인재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4. 선한인재장학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장학금으로,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대학교에는 다양한 교외재단, 발전기금, 대학자체 장학금 등이 있으므로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대학, 학과 공지사항 참고하셔서 타 장학금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

## □ 신청서 작성 관련

Q5. 신청 상태가 “신청”에서 “신청완료”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상 신청된 것인가요?

A5. 그렇습니다. “신청”으로 뜨는 경우 정상 신청된 것이 맞습니다.

Q6.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6. 아닙니다. 학생별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은 학교에서 직접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 □ 장학금 지급 관련

Q7. 학자금지원구간이 늦게 나오면 지나간 월정금액은 받을 수 없나요?

A7. 아닙니다. 지나간 월정금액은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인되는 대로 모두 지급합니다.

예) 학자금지원구간(ex: 차상위계층)이 4월 말에 부여된 경우

5월분 지급 시 3, 4, 5월분을 포함한 총 120만원 지급 (40만원 × 3개월)

6월분 지급 시부터 월 40만원씩 지급

Q8. 다른 장학금(교외재단 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8. 학교에서는 생활비성 장학금의 중복수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장학금에서 중복수혜를 금지하는 경우 선한인재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